

의안번호	2207998
의 퇴 인	강선우의원
회 답 일	2025.3.13.
추 계 번호	25D0718
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2제4항 (중앙 및 시·도재난 심리회복지원단 설 치 등) 신설	중앙심리지원단장은 효과적인 심리회복지원을 위 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구호기관 등을 포함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8조의2제7항 (중앙 및 시·도재난 심리회복지원단 설 치 등) 신설	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구조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공무원, 재난피해자 등의 충분한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의2제4항 (중앙 및 시·도재난심리회 복지원단 설치 등) 신설	• 미대상: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설치하 여 운영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라 민 간의 구호기관 등이 포함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 및 운 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2	안 제8조의2제7항 (중앙 및 시·도재난심리회 복지원단 설치 등) 신설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(안 제8조의2제7항 신설)
 -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피해자 등의 충분한 심
리회복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내용, 규
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- 재난 발생 시 구조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공무원,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및 심리상담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심리회복지원사업의 확대 범위 및 내용, 심리회복을 위한 신규 사업의 도입 여부 및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 기준 9억 4,000 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
 - 예를 들면, 재난경험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회복력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‘마음구호 프로그램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집중호우, 산불 등의 재난을 경험한 2,279명이 참여

[표 1]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(2023년)

• (마음 배움) 재난 스트레스 반응 이해하기, 스트레스 자기 돌봄 등 • (신체 휴) 나를 다독이는 자세, 착지하기, 복식호흡, 근육 이완법 등 • (마음 쉽) 보름달 호흡, 평온함 찾기, 안전금고에 보관하기 등 • (관계 이음) 자원지도 만들기, 원예활동, 거미줄 활동 등		
		
재난스트레스 반응 이해하기 (울산)	나를 다독이는 자세 (세종)	자원지도 만들기 (전북)

자료: 행정안전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